



2026학년도 2학기 교육실습 출 석 인 정 의 례 서

인 적 사 항	성 명		학 번	
	대 학 (원)		학 과 (전 공)	
	실 습 기 간	2026 년 월 일 (요 일) - 월 일 (요 일) / 4 주		
신 청 내 용	교 과 목 명			
	학 수 번 호			
	담 당 교 수			

위 학생은 상기 기간 동안 교육실습으로 인하여 강의에 출석할 수 없(었)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, 교육실습 기간 중 출석 인정을 의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관련 규정] 이화여자대학교 학칙

제40조(결석자에 대한 처리) ① 1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때에는 그 교과목의 성적을 F 또는 U로 한다.

<개정 2016.6.16., 2017.8.16., 2018.2.7.>

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한 때에 사유발생 2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6.6.16., 개정 2017.8.16.>

(중략)

3. 주관 기관장이 증빙서류를 발행한 국제대회, 훈련, 연수 및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

(이하생략)

제5조의2(결시신청) ① 학생이 학칙 제40조제2항의 각 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개시일 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.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결시자에 대해 추가시험을 실시하거나 과제물을 부과할 수 있다.

③ 결시자의 추가시험 등의 성적처리는 성적입력마감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.

④ 결시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(중략)

3. 국제대회, 훈련, 연수 및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: 주관 기관장명의 증빙서류 <개정 2017.12.14.>

(이하생략)

2026 년 월 일

이 화 여 자 대 학 교 교 직 부

